

4. 국제어학원 규정

제정일 : 2007년 11월 6일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국제어학원(이하 “어학원” 이라 한다)의 조직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어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- ① 외국어 및 한국어 언어교육 (정규강좌 및 특별강좌운영)
- ② 언어교육과 언어능력 측정에 관한 상담 및 지도
- ③ 기타 본 어학원과 관련되는 사업

제3조(조직) 어학원에 교육팀, 연구팀, 운영팀을 둔다.

- ① 교육팀은 언어교육 및 실습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
- ② 연구팀은 언어교육연구 및 자료수집, 언어능력평가, 홍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
- ③ 운영팀은 서무와 회계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
- ④ 어학원의 교육은 본교 전임교원 및 외래강사가 담당한다.

제4조(임원)

- ① 원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원장은 어학원을 대표하여 소속원을 지휘, 감독하며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제5조(연구원 및 강사)

- ① 연구원은 전임연구원과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. 전임연구원은 어문학 또는 언어교육학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보조연구원은 어문학 또는 언어교육 학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원장이 임명한다.
- ② 강사는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, 어학원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교육을 담당한다.
- ③ 강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강사 중 수석강사를 원장이 임명 할 수 있다.

제6조(운영위원회)

- ① 어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위원회는 원장, 교무처장을 포함한 5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.
- ③ 위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본운영계획
 2. 예산 및 결산
 3. 제규정의 재개정 및 폐지의 검토
 4. 기타 어학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- 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⑥ 위원회의 회의는 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강좌)

- ① 어학원은 필요에 따라 정규 강좌 외에 특별강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원장은 수강인원이 적정수준에 미달할 때에는 해당강좌를 폐강할 수 있다.
- ② 어학원의 수강대상은 본교 교직원, 학생과 외국인 그리고 지역주민으로 한다.

제8조(재정)

- ① 어학원의 재정은 자체수입금, 각종 위탁 연구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- ② 어학원의 예산년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

제9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 정하여지지 않는 어학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7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.